# 금 융 감 독 원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전화 3786-7724 / 전송 3786-7748

처리부서 회계감독1국 회계감독총괄팀 부국장(팀장) 최진영 담당자 검사역 오창화

문서번호 회일총

발신일자 2005. 5. .

수 신 참여연대(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 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제 목 청와대 이첩민원 회신**

1. 귀하가 2005. 5. 16.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BA-0505-004737) 관련입니다.

2. 동 민원은 2005. 5. 1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령) 및 참여마당신문고운영규정등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으로 우리원에 접수(접수번호 00006385)되었는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께서는 금감위의 과거분식 수정시 감리미실시와 관련하여 첫째, 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의 취지가 단순히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만이 아니라 '과거분식을 해소할 기회의 부여라는 사회적 합의의 주인'이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증권집단소송법 부칙개정의 취지는 과거 회계 잘못을 조기에 해소하여 기업의 집단소송 불안을 완화하고 미래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합의에 더 잡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소송 적용유예기간의 부여는 그 자체에 과거 잘못에 대한 자발적 해소 기회 부여라는 의미가 내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국회에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기회의 부여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아야 한 것입니다.

둘째, 민원인께서는 2005년 3월 11일 금감위원장의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 대통령이 관련 감리 면제 방침에 대해 보고받은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 전체에 대하여 감리제외를 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환경조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의 하나로서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내용에 과거분식 자발적 수정시 수정부분 2년간 감리제외 방침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동 일자의 금감위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단소송법 개정부칙 상 적용유예 대상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이지만 공개기업 전체에 대한 과거회계기준위반에 대한 수정요구는 동일하며, 회계투명성의 확보의 필요성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보다 현저하고 나아가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어 외감법적용 대상 기업 전부에 대하여 동 조치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외감법 개정 또는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치는 외감법에 의하여 부여된 금감위 및 증선위의 재량권한 범위 내에서 외감규정과 실무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리제외 및 조치의 유예를 받는 것이므로 이는 질의하신바와 달리 과거회계분식 사면이 아니며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닌 행정고유 영역의 문제라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치는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예한 입법취지를 적극 반영,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감법 차원에서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행정제재 등을 우려, 과거 위반행위의 해소를 주저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의 호기를 실기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외감법 개정의 필요가 없으며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여부와도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금 융 감 독 원 장**